진보정의당 당헌

2012.10.21. 창당대회 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목차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당원

제3장 당원 총투표

제4장 대의기구

제5장 집행기구

제6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7장 고문단

제8장 원내기구

제9장 정책연구소

제10장 지역조직

제11장 공직선거

제12장 재정

제13장 지지단체

제14장 보칙

부칙

전문

<u>진보정의당</u>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여는 혁신적 진보정당이다. 진보정의당은 현대적이며 민주적인 진보대표정당이 되기 위해 다음을 지향한다.

<u>진보정의당</u>은 노동기반 대중정당이다. 조직된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등다양하고 광범위한 노동계층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이다. 일하는 국민 누구나 지지할 수 있고,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당이다.

<u>진보정의당</u>은 시민참여 진보정당이다. 시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적인 정당이다. 리더십을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정당이다. 주권자인 시민은 누구나 진보정의당의 주인이 될 수 있다.

<u>진보정의당</u>은 현대적 생활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확장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노선과 정책, 세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현대적 진보정당이다. 진보적 정책과 노선의 생산적 경쟁으로 국민을 삶을 바꾸는 생활정당이다.

진보정의당은 진보대표정당을 지향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두고, 진보의 혁신에 동의하는 노동자·농민 빈민·시민·진영 및 개인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다. 통합적 진보정치 리더십을 실현하고, 진보 대표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책임정당이다.

이러한 진보정의당의 지향을 담아 당헌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은 '진보정의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 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 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 7. 단, 위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 7. 당비납부의 의무

제6조(당비)

- ①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제5조 1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모 정한다.

제7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 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포상과 징계)

-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당원 총투표

제10조(당원 총투표)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 1. 당의 합당과 해산
 - 2.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 ② 당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한다.

제4장 대의기구

제1절 당대회

제11조(지위와 구성)

- 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당대표 및 부대표
 - 2. 전국위원
 - 3. 당고문
 - 4. 당 소속 국회의원
 -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 ② 1항의 당대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령의 개정
- 2. 당헌의 개정
-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13조(의장단)

- ① 당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으로 구성한 의장단을 둔다.
- ② 의장단은 당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 ③ 의장단의 임기는 당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제14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소집 및 운영)

-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6조(지위와 구성)

-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 1. 당대표 및 부대표
 - 2. 당 소속 국회의원
 - 3. 광역시도당위원장
 - 4. 선출직 전국위원
 - 5.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 ③ ②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 8. 지지단체의 인준
-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 11. 당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 12.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제18조(전국위원의 임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소집 및 운영)

-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단, 재적전국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②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당대표

제20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 2.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 3.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4.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 6. 중앙당직자의 임면
- 7.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 ③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1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2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부대표)

- ①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 ②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제24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각종 기구

제25조 (상무 집행위원회)

- ①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상무 집행위원회는 당 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는 기구이다.
- ③ 상임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사무총국)

-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 ②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④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정책위원회)

- ①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 (중앙교육연수원)

-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 ②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③ 중앙교육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기타) 당은 홍보, 인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집행을 위해 각종 부서를 설치하

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30조(당기위원회)

-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당기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⑤ 광역시·도당기위원회는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⑥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 당 및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관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 ④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 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 광역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 의 판정권을 가진다.
- 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예산결산위원회)

-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고문단

제33조(고문)

-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당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4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직속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의결
-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의결
-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 9.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36조(소집 및 운영)

- 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
- 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7조(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38조(선출 및 임기)

-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0조(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 및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제41조(원내대책회의)

-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
-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42조(원내활동 지원) 원내활동에 대한 당의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정책연구소

제43조(정책연구소)

-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44조(지위와 구성)

- ①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직장)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 ② 광역시·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③ 광역시·도당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④ 광역시·도당의 인준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대의원대회)

- ①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 2.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 3.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 4.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 5.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중앙대의원
- 6. 기타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 ②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광역시·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 2. 광역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 3.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 4. 광역시·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소집 및 운영

- 1.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1번 광역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광역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 2. 임시 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기타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운영위원회)

- ①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광역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 2.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 3.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 4. 기타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광역시·도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 3.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광역시·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 8.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④ 기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7조(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본 규정②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8조(사무처)

- ① 광역시·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광역시·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무기관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49조(지위와 구성)

-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 ②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의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당원대회)

- ①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③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④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⑤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 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 3. 중앙당 대의원
 - 4. 기타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사결정의 집행
 -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52조(지역위위회 위위장과 부위위장)

-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11장 공직선거

제53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 ②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 ③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재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 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외부인사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공직후보자의 인준)

- ①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전국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재정

제58조(구성)

- ① 당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예산과 결산)

-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지지단체

제60조(지지단체)

- ①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체가 될 수 있다.
- ② 지지단체에 대한 당의 세부 방침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제61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 총투표,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청산)

-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 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② 광역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여성 및 장애인 할당 경과규정)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 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제3조(직장위원회) 당헌 제43조 2항 5호의 '직장위원회'와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4조(당직자의 임기)

중앙당의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정무직 당직자들의 임기는 대표의 임기와 같이한 다. 정무직 당직자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5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한다.
-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 대표 권한 특례)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당 대표가 판단하여 집행한다.

제7조(지역조직 운영 특례) 광역시·도당관련한 각종 당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당 창당 전까지의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소속기관은 본 당헌에서 규정하는 광역시도당과 그 소속기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8조(기타 경과규정)

본 당헌에 따라 당의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종전 당헌에 따라 구성한 해당 기관이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